

농림축산식품부령

산 립 교 육 의 활 성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함

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변경(안 제4조제5항 관련 별표2)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함

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4조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서식)를 제출토록 함

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안 제4조제7항)

마.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 서류 감축 및 자격증 발급 형태 변경(안 제6조제1항3호, 제3항제2호,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재교부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줄이고(사진 2→1장), 자격증 발급은 종이문서(A4)에서 카드형으로 변경함

바.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9조제2항 관련 별표3)

-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붙임 1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실적”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장”을 각각 “1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도법”을 “제도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증표시



가. 표시도형의 우측 상단에는 ‘산림청’과 ‘인증번호’, 우측 중앙에는 ‘숲교육’표시를 하고, 아랫부분에는 ‘국가인증’과 ‘산림교육프로그램’

램'이라고 적는다.

나. 글자의 활자체는 산돌(Sandoll) 고딕 네오라운드(NeoRound)체를 권장하고, 권장체 사용이 어려울 경우 '고딕체'를 사용한다.

다. 표시 도형의 세로 높이(사각형의 상단과 하단 끝의 높이: W)를 기준으로 상, 하, 좌, 우의 여백은 W의 1/3만큼 여백을 두고 표시한다.

라. 표시도형의 크기는 최소 높이 15mm를 준수하되 제작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마. 표시도형은 흰색과 같이 대비가 강한 배경색을 사용하여 잘 보이도록 한다.

바. 표시도형의 글자 “숲교육”은 C88+M37+Y55+K17, R0+G112+B105 색상을 사용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9조제3항 관련)”을 “(제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가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전단 중 “처분을 한”을 “지적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을 “기간의 계산”으로, “한 날과”를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적발한 날”을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 제1호나목 중 “2장”을 “1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 제2호나목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제4조제5항 관련)

1. 인증표시



2. 제도별

- 가. 표시도형의 우측 상단에는 ‘산림청’ 과 ‘인증번호’, 우측 중앙에는 ‘숲교육’ 표시를 하고, 아랫부분에는 ‘국가인증’ 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이라고 적는다.
- 나. 글자의 활자체는 산돌 (Sandoll) 고딕 네오라운드 (NeoRound) 체를 권장하고, 권장체 사용이 어려울 경우 ‘고딕체’ 를 사용한다.
- 다. 표시 도형의 세로 높이 (사각형의 상단과 하단 끝의 높이: W)를 기준으로 상, 하, 좌, 우의 여백은 W의 1/3만큼 여백을 두고 표시한다.
- 라. 표시도형의 크기는 최소 높이 15mm를 준수하되 제작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마. 표시도형은 흰색과 같이 대비가 강한 배경색을 사용하여 잘 보이도록 한다.
- 바. 표시도형의 글자 “숲교육” 은 C88+M37+Y55+K17, R0+G112+B105 색상을 사용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적**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6개월 중 짧은 기간을 한도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나.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3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라.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	법 제15조제	시정명령	시정명령	운영정지

18조에 따른 산림청장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항제4호	1개월 또는 운영정지 1개월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3개월
----------------------------	-------	-----------------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인증기관	인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프로그램 명칭	인증기간	
연장 신청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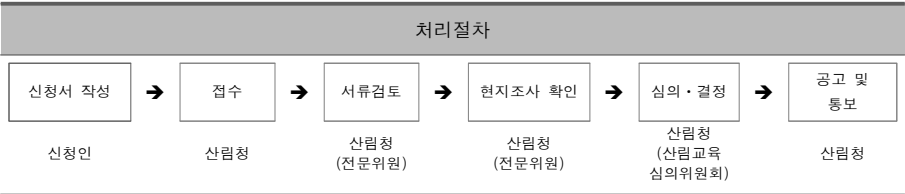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0.>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교부)/10일(재교부)
자격 종류			
신 청 인	성 명	(한글)	
		(한자)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자메일	
재교부 신청 사유	※ 재교부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전문교육 이수 기관 또는 단체	기관·단체명	지정번호	
	교육기간	이수시간	
	평가결과	이론 () 점, 실습 () 점 ※ 실습 기관(단체)명·시간·내용도 간략히 적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림 교육 전문가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산림청장 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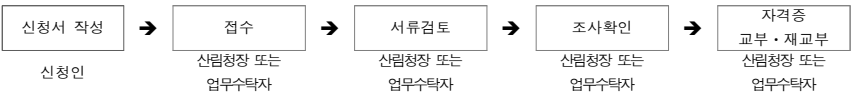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규 교부의 경우 가.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나. 사진(2.5cm×3cm 반명함판) 1장 2. 재교부의 경우 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사진(2.5cm×3cm 반명함판) 1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No. 0000-0-0000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사 진
3cm×4cm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성 명
기 관 명

55mm×85mm [폴리염화비닐(PVC)]

(뒤쪽)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종류 :
이 사람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본 자격증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mm×85mm [폴리염화비닐(PVC)]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제 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의 지정절차 등)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2. ----- 실적(실적 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 ⑤ (생략)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 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신 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산립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립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립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삭제
3. 사진 2장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① -----

1. (현행과 같음)

3. --- 1장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진 <u>2</u> 장	2. --- <u>1</u> 장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연 락 처	(042) 481 - 8869